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4.06.12

신한마음편한TDF205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CO356]

| 투자 위험 등급 | | | | | |
|----------------|----------|----------------|----------|----------|----------------|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신한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원본 손실 위험, 국가 위험, 시장 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자산배분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신한마음편한TDF205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외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므로,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자산의 비중을 축소하고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비중을 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상기 기본 운용전략 외에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자산배분 최적화 모델에 따라 다양한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되며 자산군별 장기 비중에 따라 자산별 비중이 조정되므로 특정한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될 예정입니다.

| 분류 | 투자신탁, 증권형(혼합주식-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 | | | | | | | | | | |
|---|---|-----------------------------|---------------------------|-------|-------|-----------|---------|---|-----|-----|-----|-------|
| 투자비용 | 클래스 종류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 | | | | | |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 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원) | | | | |
| | | 판매 수수료 | 기간 | 총보수 | 판매보수 | 동종 유형 총보수 | 총 보수 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 수수료선 취-오프 라인(A1) | 납입금 액의 1.00% 이내 | 최초설정일~ 2034.12.31 | 1.018 | 0.640 | 0.970 | 1.2138 | 223 | 350 | 482 | 762 | 1,562 |
| | | | 2035.01.01~ 2039.12.31 | 0.748 | 0.420 | | 0.9438 | | | | | |
| | | | 2040.01.01~ 투자신탁 해지일 | 0.478 | 0.200 | | 0.6738 | | | | | |
| | 수수료미 징구-오 프라인 (C1) | 없음 | 최초설정일~ 2034.12.31 | 1.308 | 0.930 | 1.230 | 1.5038 | 153 | 312 | 476 | 822 | 1,802 |
| | | | 2035.01.01~ 2039.12.31 | 1.088 | 0.760 | | 1.2838 | | | | | |
| | | | 2040.01.01~ 투자신탁 해지일 | 0.818 | 0.540 | | 1.0138 | | | | | |
| | 수수료선 취-온라 인(A-e) | 납입금 액의 0.5% 이내 | 최초설정일~ 2034.12.31 | 0.698 | 0.320 | 0.620 | 0.8939 | 141 | 236 | 334 | 544 | 1,150 |
| | | | 2035.01.01~ 2039.12.31 | 0.538 | 0.210 | | 0.7339 | | | | | |
| | | | 2040.01.01~ 투자신탁 해지일 | 0.378 | 0.100 | | 0.5739 | | | | | |
| | 수수료미 징구-온 라인(C- e) | 없음 | 최초설정일~ 2034.12.31 | 0.843 | 0.465 | 0.840 | 1.0388 | 106 | 216 | 331 | 575 | 1,275 |
| | | | 2035.01.01~ 2039.12.31 | 0.708 | 0.380 | | 0.9038 | | | | | |
| | | | 2040.01.01~ 투자신탁 해지일 | 0.548 | 0.270 | | 0.7438 | | | | | |
| <p>(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p> <p>(주2) 종류 A1형과 종류C1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3년3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3년3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주3) 상기 종류 수익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주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p> <p>(주6) 총 보수 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모두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두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예상 총보수 비율은 연간 [0.16350%](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비용은 제외, 국내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타비용 제외)로 추정하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 종류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 | | |
| | | 2023.06.01 ~ 2024.05.31 | 2022.06.01 ~ 2024.05.31 | 2021.06.01 ~ 2024.05.31 | 2019.06.01 ~ 2024.05.31 | | | |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 17.28 | 9.23 | 4.22 | - | 6.65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 17.65 | 9.58 | 4.55 | - | 6.99 | | | |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16.94 | 8.91 | 3.91 | - | 6.34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17.48 | 9.42 | 4.40 | - | 6.83 | | | |
| | 수익률 변동성 | 9.15 | 11.44 | 10.94 | 13.77 | 13.68 | | | |
| (주1) 비교지수 : 없음 | | | | | | | | | |
|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 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다만,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 수익률에 대해 연환산하게 되므로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 | | | | | | | | |
|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 | | | | | |
| (주4) 상기 종류 수익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주5)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 | | | | | | | |
| (주6)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 | | | | | | | |
| 운용전문 인력 | (2024.05.31 현재) | | | | | | | | |
|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재간접형) | | 운용경력 년수 |
| 집합투자기구 수 | | | | 운용규모 | 운용역 | 운용사 | | | |
| 김성훈 | 1973 | 책임운용역 | 17개 | 8,998억원 | 최근 1년 14.04% | 최근 2년 7.02% | 최근 1년 9.22% | 최근 2년 7.85% | 18년 11개월 |
| 김의찬 | 1984 | 부책임운용역 | 12개 | 8,520억원 | 13.82% | 7.02% | | | 10년 3개월 |
|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멀티에셋운용센터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 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운용역 부재 시 등의 경우 멀티에셋운용센터 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 | | | | | | | | |
|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p>(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p> <p>(주 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p> | | | | | | | | |
|--------------------|---|----|-------------|--------------------|--|-------------|---|-------|---|
| 투자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최초설정일 이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 35 조 및 제 36 조에 따른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한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과 "신한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의 자투자신탁으로 전환하며, 집합투자규약 제 43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p> | | | | | | | | |
| 주요 투자 위 험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8e6c9;">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구분</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투자위험의 주요 내용</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10px;">증권 등 가격변동위 험</td><td>투자대상 증권의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에서의 증권 수급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해외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해외 시장의 지정학적 위험 및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10px;">원본 손실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10px;">국가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 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td></tr> </tbody> </table>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 증권 등 가격변동위 험 | 투자대상 증권의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에서의 증권 수급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해외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해외 시장의 지정학적 위험 및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원본 손실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국가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 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 | | | | | | | |
| 증권 등 가격변동위 험 | 투자대상 증권의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에서의 증권 수급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해외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해외 시장의 지정학적 위험 및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원본 손실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국가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 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 | | | | | | | |

| | |
|-------------|--|
| |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 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 시장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해당 증권 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증권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 증권가격의 등락을 초래하며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은 적은 원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 <p>해외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환율변동 관련 위험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환위험관리</p> <p>이 투자신탁은 해외 통화로 거래되는 해외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p> <p>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투자대상자산 중 기축통화(하드커런시: 미국달러화, 유로화 등) 채권에 투자하는 해외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원화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거래비용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한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담당운용역은 향후 거래비용과 유동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거나 운용전략 측면에서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다만, 해외주식, 부동산(리츠 포함),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해외집합투자증권 및 기축통화를 제외한 기타 통화(로컬커런시) 채권에 투자하는 해외집합투자증권 투자에는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해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환율변동 및 금융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환헤지를 통한 환율변동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담당 운용역은 환헤지를 일부 실행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p> <p>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 환헤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
| 자산배분 위험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산별 편입비율을 조절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으로 인해 특정 자산의 손실이 확대되어, 펀드 전체의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지거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일반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변동성 및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매입 방법 | 가. 17시 이전: 제3영업일 (D+2)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17 시 경과 후: 제 4 영업일 (D+3)의 기준가격을 적용 | | | | | | | | |
| 환매 방법 | 가. 17 시 이전: 제 4 영업일(D+3)의 기준가격으로 제 8 영업일(D+7)에 지급 나. 17 시 경과 후: 제 5 영업일(D+4)의 기준가격으로 제 9 영업일(D+8)에 지급 | | | | | | | | |
| 환매 수수료 | 없음 | | | | | | | | |
| 기준가격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2e0; padding: 5px;">산정방법</td><td colspan="2" style="padding: 5px;">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 좌 단위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까지 계산합니다.</td></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2e0; padding: 5px;">공시장소</td><td colspan="2" style="padding: 5px;">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td></tr> </table> | |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 좌 단위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까지 계산합니다.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 |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 좌 단위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까지 계산합니다. | | | | | | | |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 | | | | | | | |
| 과세 | <p>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 등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및 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퇴직연금제도의 세제(퇴직연금 전용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p> <p>이 투자신탁은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연금저축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p> <p>이 투자신탁은 연금저축계좌 불입 금액의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color: red;">※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p> <p style="color: red;">※ 상기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 | | | | | | | |
| 집합투자 업자 | <p>신한자산운용(주)(대표번호: 02-767-5777 /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fund.com)</p> <p>이 투자신탁은 비엔피 파리바 자산운용(BNP Paribas Asset Management France)으로부터 글로벌 멀티 에셋에 대한 조사분석 및 자산배분에 관한 투자자문을 받습니다.</p> | | | | | | | | |
| 모집(판매) 기간 | <u>2019년 04월 22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 까지</u> | 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 | | | | | |
| 효력발생 일 | 2024년 06월 19일 | 존속 기간 |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 | | | |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 | | | | | | |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 <p>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로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90EE90;">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종류(Class)</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 10px;"> 판매 수수료 </td><td style="padding: 10px;"> <p>수수료선취</p> <p>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3년3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3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수수료미징구</p> <p>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선취형(A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3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3월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td></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 10px;"> 판매 경로 </td><td style="padding: 10px;"> <p>온라인(e)</p> <p>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p>오프라인</p> <p>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p> <p>온라인슈퍼(S)</p> <p>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기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td></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 10px;"> 기타 </td><td style="padding: 10px;"> <p>무권유저비용</p> <p>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개인연금</p> <p>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퇴직연금</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합니다.</p> <p>퇴직연금(디폴트 옵션)</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중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랩</p> <p>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고액, 기관</p> <p>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고유재산</p> <p>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의 계열금융회사 등이 매입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td></tr> </tbody> </table> | | 종류(Class)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판매 수수료 | <p>수수료선취</p> <p>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3년3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3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수수료미징구</p> <p>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선취형(A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3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3월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 판매 경로 | <p>온라인(e)</p> <p>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p>오프라인</p> <p>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p> <p>온라인슈퍼(S)</p> <p>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기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 기타 | <p>무권유저비용</p> <p>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개인연금</p> <p>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퇴직연금</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합니다.</p> <p>퇴직연금(디폴트 옵션)</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중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랩</p> <p>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고액, 기관</p> <p>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고유재산</p> <p>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의 계열금융회사 등이 매입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
| 종류(Class)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 | | | | | |
| 판매 수수료 | <p>수수료선취</p> <p>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3년3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3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수수료미징구</p> <p>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선취형(A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3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3월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 | | | | | | | | |
| 판매 경로 | <p>온라인(e)</p> <p>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p>오프라인</p> <p>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p> <p>온라인슈퍼(S)</p> <p>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기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 | | | | | | | | |
| 기타 | <p>무권유저비용</p> <p>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개인연금</p> <p>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퇴직연금</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합니다.</p> <p>퇴직연금(디폴트 옵션)</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중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랩</p> <p>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고액, 기관</p> <p>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고유재산</p> <p>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의 계열금융회사 등이 매입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 | | | | | | | |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shinhanfund.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shinhanfund.com)